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3187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군수
제 1 심 판 결	[redacted]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10363 판결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분 중 '다투지 않는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3면 첫 번째 표 첫 번째 줄의 "32.42"를 "50"으로, 제3면 첫 번째 표 아래 제1행, 제4면 제7행 및 제11행, 제6면 제13행 및 제7면 제5행의 각 "재무재표"를 "재무제표"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재무제표상 유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규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까지 모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다. 과세요건 및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사유 등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정당한 세액에 관한 증명을 다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다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원고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의 '판단' 부분(제5면 표 아래 제4행부터 제8면 마지막 행까지이다)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제1심판결 제4 내지 5면의 표에 기재된 내용임)이 이 사건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한 바 있다. 또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부가적인 이유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과점주주의 신고가 없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장부 등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취득세의 경우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관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면 충분하다고 볼 것이고, 달리 피고가 해당 법인의 장부 등에 기재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일일이 조사한 후 취득의제 당시의 자산가액을 독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쟁점금액의 각 항목들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들로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 포함되었거나, 이 사건 회사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이 사건 회사 장부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쟁점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도 이 사건 장부에 계상된 개별 유형자산의 가액에는 오류가 없고 특별히 장부상 취득가액이 조작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이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장부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산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상 유형자산가액에 오류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장부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적법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원고들이 제출한 2019. 10. 15.자 및 2019. 11. 19.자 참고서면 첨부 참고자료 1 내지 4 및 참고자료 6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나아가 주주들로서는 특정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당해 법인의 장부를 통하여 법인의 자산과 부채 등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취득의제 시점 직전에 법인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산가액을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될 과점주주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3. 결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